

구미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 .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조례에 규정된 일부 조항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가 제출되었을 때 열람기간을 상위법 규정과 일치하도록 개정(안 제10조)

- 법률에 따라 청구인서명부의 열람기간을 7일로 규정

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위촉 위원회 구성 비율 규정을 신설(안 제12조)

-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게 위촉 위원 구성

다. 공고의 대상이 되는 법조문 추가(안 제16조)

- 법 제26조(재투표 및 투표연기) 제1항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민투표법」, 「양성평등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민투표법(이하 “법” 이라 한다)”를 “「주민투표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시장” 이라”를 ““시장”이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5조제1항”을 “「주민투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 중 “투표인 명부작성기준일”을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로, ““시”라”를 ““시”라”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7조제1항에 따라”로,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7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공동출자 하는”을 “공동출자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 중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7조 중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 투표청구서”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각호의 1에 해당되는”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주민투표심의회”를 “주민투표청구심의회”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별로 열람기간 및”을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7일간 읍·면·동별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 중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 라”를 “구미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제12조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13인 이내”를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3명 이하”로, “3분의2이상”을 “3분의 2 이상”으로, “자로 한다”를 “사람으로 하

고, 위촉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총괄부서”라”를 “총괄부서”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구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구미시의회의원 2명

제12조제4항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인정되는자”를 “인정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1이상”을 “1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본문 중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조 제5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중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제3항 중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제2항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제1항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 ⑥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제16조 중 “법 제10조 제2항”을 “법 제10조제2항”으로,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도보·시보·게시판·일간신문중”을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법 제13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고는 관보·도보·시보·게시판·일간신문 중”으로, “인터넷에의”를 “인터넷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주민투표법</u>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주민투표법</u> 」----- ----- ----- ----- -----.
제2조(책무) ① 구미시장(이하 " <u>시장</u> "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조(책무) ① ----- " <u>시장</u> "이라 ----- ----- ----- -----.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 「 <u>주민투표법</u>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 ----- ----- -----.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구미시(이하 "시" 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4. 법령상기금 이외의 각종 기금, 지방채, 시와 민간이 공동출자 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5. (생략)

6. 기타 복리·안전·환경 등 주민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
-----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
"시"라 -----

--- 사람은 -----.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
-----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

-----.

1. ~ 3. (현행과 같음)

4. -----
----- 공동출자하는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로 한다.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

-----.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
-----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② -----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 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 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생년월일,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

-----.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

-----.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

-----.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서명은 주민투표심의
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무효
로 결정한다.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
에 의하여 읍·면·동별로 열람
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
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시
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
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③ -----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 주민투
표청구심의회-----
-----.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7일간 읍·면·동별로 -----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

---.

④ ----- 법 제12조제3항에 따
른 -----
----- 제1항에 따른 -----

-----.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
제7항에 따른 -----
-----.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시장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
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

1.·2. (생략)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
결정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
항

② (생략)

③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13
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2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한다. <단서 신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
----- 각 호-----
----- 구
미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

1.·2. (현행과 같음)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
결정

4. 그 밖에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3
명 이하-----
----- 3분의 2 이상-----
--- 사람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
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 하되, 주민투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의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생략)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3. 시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자

⑤ (생략)

⑥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제3항에 따른 -----
---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 "총괄부서"라 -----

--.

1. (현행과 같음)

2. 구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구미시의회의원 2명

3. -----

- 사람

4. 그 밖에 -----

----- 인정되는 사람

⑤ (현행과 같음)

⑥ -----
----- 1 이상 -----
-----.

⑦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표결결과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한다.

⑧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과장이, 서기는 담당주사가 된다.

⑨ ~ ⑭ (생략)

제13조(처리기간) ① (생략)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⑦ -----

----- . 다만, -----

⑧ _____

_____ 1명

⑨ ~ ⑭ (현행과 같음)

제13조(처리기간) ① (현행과 같음)

(2) -----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

-----.
법에 제12조제7항
에 따른 -----

-----.

③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 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③ -----
----- 해당 -----

----- 해당 -----

-- 한 차례만 -----
-----.

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

-----.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

-----.

-----.

제15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④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⑤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⑥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제15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 따른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③ 제6조제2항에 따른 -----

----- 따른다.

④ 제8조제1항에 따른 -----

--- 따른다.

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⑥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제16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 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 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 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제10조제4 항 및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도보·시보 ·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 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 재로써 한다.	제16조(공표방법 등) ----- ----- 법 제10조 제2항----- -----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법 제13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1항 에 따른 공고는 관보·도보·시 보·게시판·일간신문 중 ---- --- 인터넷에 ----- -----.
---	---

관계법령

□ 「주민투표법」

제12조(청구인서명부의 심사·확인 등) ① ~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없이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하고,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7일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 ⑨ 생략

제26조(재투표 및 투표연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무효로 된 투표구의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일은 늦어도 투표일전 7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

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⑤ 생략

소관 실 · 과		총 무 과
입 안 자	과 장	김 종 율
	담 당	박 주 영
	담 당 자	이 중 호 (480-6762)